

# 日帝下 農地令의 性格에 관한 研究

朱 奉 圭\*

.....<目 次>.....

I. 問題의 所在
II. 農地令制定의 背景
III. 農地令의 內容
IV. 農地令의 性格
V. 綜 合

.....

## I. 問題의 所在

日帝下 農業發展段階는 土地收奪을 基軸으로 하는 本源的 資本蓄積期下에서의 農業發展의 推進 展開를 비롯하여 產米增殖計劃을 中心으로 한 農民支配와 小作問題의 本格的인 推進 展開時期 그리고 1929年 가을 美國에서 爆發된 經濟恐慌이 襲來되어 空前의 大世界恐慌으로 發展되어 가는 가운데 農產物價格의 大暴落과 畝稅現象의 激化로서 具體化되고 있었던 時期 및 日帝末期下에 農民의 苛酷한 戰時的 負擔이 强要되고 있었던 時期로 區分된다.

특히 1930年代 經濟恐慌과 더불어 小作爭議가 漸增되는 가운데 그의 樣相이 深化되고 있었거니와 이에 따라서 農家更生計劃과 自作農家創定維持計劃의 目標設定 속에서 農村振興運動이 展開되고 있었던 것이나 그의 本格的인 時期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를 一層 促進하고 強化하여 效果的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그의 助成的인 施設을 講究 實施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農地令이다.

이에 農民의 窮乏經濟下에서 農民生活의 安定과 向上을 圖謀하며 地主·小作人의 協調 融和의 精神下에 農事의 改良 發達 및 農家經濟의 進歩를 期하며, 나아가서 地主·小作人의 共存共榮의 實績을 擧揚하며 朝鮮農業의 發展과 農村平和의 維持 改善을 目標로 한 朝鮮統治의 根本的 大方針에 根據를 두고 制定 公布된 法令으로서의 農地令에 關한 性格을 解明함으로써 農地令에 關한 歷史的인 意義를 定立 究明하러 함에 本稿의 目的이 있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農經濟學科 教授

## II. 農地令制定의 背景

日帝下의 地主·小作制度는 外形上으로는 身分關係로부터 契約에로의 轉化 속에서 小作關係가 이룩된 것같이 보여지지만 그의 內容에 있어서는 顯著히 封建的 殘滓에 膠着되어 있었음을 否定할 수 없다.<sup>(1)</sup> 더우기 傳來로부터의 高率의인 小作料, 不定期小作이 大部分이었다는 事實, 地主와 舍音<sup>(2)</sup>에 對한 封建的 貢納의 存在, 管理制度의 弊害 등등은 모두 이를 實證하는 例들이다. 따라서 日帝下의 韓國小作農民은 日帝植民資本의 重壓 以外에 封建的 農奴의 過剩 때문에 二重의 重壓을 甘受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던 狀態에 놓여 있었다.

위와 같은 狀況下에서 日帝下 朝鮮의 小作制度에 法的인 統制를 加함에 依해서 小作農民의 地位安定을 圖謀하며 나아가서 生産力의 增進을 期함과 同時에 農地賃借權의 確保 및 舍音制度의 弊害矯正과 小作爭議解決機關으로서의 小作委員會設置 등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小作法의 制定을 期하게 되었다.

勿論 朝鮮總督部는 小作制度改善의 積極的인 手段으로서 地方官官制를 改正하여 各道에 小作官을 配置하고 小作制度의 調査 研究를 積極的으로 하도록 함과 同時에 每年 激化一路에 있던 當時의 小作爭議의 調停에 臨하게 하였고 나아가 小作立法의 基礎資料를 蒐集하기 위하여 全國적으로 精密한 調査項目을 設定하여서 面單位로 小作慣行調査를 着手시키고 아울러 小作問題에 關한 地主·小作人의 意向을 聽取 調査하여 이를 小作立法의 基礎로 한 바 있었다. 이에 根據하여 1932年末에 朝鮮小作調停令을 制定하기에 이르렀고 1933年 2月부터 이를 實施함과 同時에 小作官의 增員을 通하여 本格化시킨 바 있었다.

小作調停令이 制定 公布되기 以前의 1930年代의 經濟恐慌下에서의 農村經濟의 窮乏化 및 慘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30年代 經濟恐慌下에서 農民의 窮乏과 階級分化가 顯著化되어 農村에 있어서의 階級間의 葛藤과 鬭爭이 銳利하게 되어 있었다.

우선 穀價의 暴落은 地主를 惶惶케 하였으나 그의 影響은 즉시 小農에게 二重의 負擔으로 轉化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 分明하다(〈表 1〉과 〈表 2〉 參照).

이와 같은 狀況 속에서 小作農에로의 各種負擔의 轉化는 小作關係에 있어서 小作料의 引上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은 小作問題의 激化로서 發展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農民의 階級的 分化過程은 더욱 促進되었고 그것은 農家의 負債를 累增케 하였

(1) 津曲藏之丞, 「朝鮮に於ける小作問題の發展過程」, 京城帝大 法文學會, 『朝鮮經濟の研究』, 1929, p. 412.

(2) 朱奉圭, 「日帝下 舍音에 關한 研究」, 『經濟論集』, 제 XVI권 제 3호 (1977.9), pp. 361-367.

〈表 1〉 物價指數와 米價指數

年 度	物價指數(%)	米價指數(%)
1926	100.0	100.0
1927	97.4	90.0
1928	94.5	78.8
1929	95.1	80.0
1930	86.6	60.8

資料：朝鮮總督府, 『調査月報』, 1933.

〈表 2〉 米作生産量과 單價

年 度	面積(千町)	收穫量(千石)	
		(精 穀)	(粗 穀)
1926	1,588	15,301	15.01
1930	1,662	19,181	10.14
1931	1,763	15,912	6.61

資料：朝鮮總督府, 『調査月報』, 1933.

〈表 3〉 細窮民 累積狀況

(單位：名)

年 度	細 民 <sup>(1)</sup>	窮 民 <sup>(2)</sup>	乞 人	計
1926	1,860,000 (9.7)	295,620 (1.5)	10,066 (0.1)	2,155,620(11.2)
1930	3,406,104(17.1)	876,283 (4.3)	—	4,342,387(21.4)
1931	4,203,104(20.7)	1,048,467 (5.1)	163,753 (0.8)	5,439,446(26.8)

資料：李如星·全世鎔, 『數字朝鮮研究』, 1933, p. 67.

- (1) 細民이란 生活이 極히 窮迫한 狀態에 있으나 우선 延命하여 가는 者를 말함.
- (2) 窮民이란 緊急救濟를 要할 狀態에 있는 者를 말함.

다. 小農은 이미 그의 償還能力을 훨씬 超過한 困境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 밖에도 小作問題의 激化過程이나 貧農의 累積 그리고 細窮民의 顛落相은 極度に 達하여 있었다.

따라서 春窮農民이나 火田民은 말할 것도 없고 文字 그대로 沒落된 農民의 乞食者를 일일이 計數적으로 따질 수 없을 程度로 慘狀에 놓여 있었다. 農村의 危機는 緊迫하였고 小農의 生活相은 絶望狀態에 있었다. 都市 失業人口의 農村壓迫과 潛在失業의 激增을 보게되었던 것도 바로 當時의 狀況에서 이룩되고 있었던 一端이었다(〈表 3〉 參照).

그리하여 經濟恐慌의 襲來에 依한 農產物價格의 急落으로 農家의 窮乏과 破滅이 激甚하게 되고 있었을 때에 雪上加霜으로 日帝統治者들은 資本家에 對한 擁護政策을 敢行하는 가운데 朝鮮農民의 沒落을 더욱 促進하고 있었다.

1930年代의 日帝下의 韓國의 農民經濟는 貧困의 深化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니와 그것은 「小作階級의 農民은 1個年의 食糧을 維持할 만한 能力이 없었고 麥收穫前 혹은 7,8

月頃に 이르러서는 食糧缺乏하므로 地主로부터 食糧貸與를 받은 사람이 많았고 秋收期에 있어서는 이들 舊債의 償還과 小作料를 納付하고 나면 殘餘分이 全無하여 每年 食糧의 前貸를 反復하는 狀態에 있었다. 더욱기 이들 地主로부터 貸付받은 사람은 高利의 것이므로 零細農은 더욱 더 窮乏化하고 있었다<sup>(3)</sup>와 「食飯은 食粥으로 米穀은 雜穀으로 雜穀은 滿洲 粟로 轉落된 속에서 生活를 維持하며 그에 依하여 生活維持가 困難한 小作農階層은 親戚故舊에 依存한 強制食客化, 乞食 및 流離하였다<sup>(4)</sup>에서 農民窮乏化의 慘狀을 알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極端的인 農民窮乏은 마침내 農民離村現象으로 나타나 社會經濟問題로 露出되고 있었으며 이들 離村類型이 國內에서의 流浪, 滿洲 및 시베리아에로의 移住, 그리고 日本渡航의 三類型으로 나타나고 있었다(〈表 4〉 參照).

〈表 4〉 朝鮮農民의 轉業狀況

轉業種別	南 鮮 七 道		北 鮮 六 道		全 鮮	
	人 數	%	人 數	%	人 數	%
商業에 就業한 者	18,618	15.35	5,180	18.00	23,728	15.84
工業 및 雜業에 就業한 者	12,653	10.43	4,226	14.68	16,879	11.22
勞働者 또는 雇傭人員된 者	55,562	45.79	14,082	48.92	69,644	46.39
日本에로의 出嫁者	24,775	20.42	533	0.03	35,308	16.85
滿洲 및 시베리아에로의 出嫁者	1,824	1.50	2,400	9.12	4,224	21.88
家離散者	5,694	4.69	1,141	9.66	6,835	4.55
其他 轉業者	2,273	1.82	1,229	5.29	3,497	2.27
總 計	121,329	100.0	28,783	100.0	150,112	100.0

資料：久間健一, 『朝鮮農業의 近代的樣相』, 1935, pp. 32~33.

그런데 國內에 있어서 農民離村은 放浪的 農業勞働者가 되던가 혹은 都市에 集中하여 商工業勞働者로 되어 있는 것이 一般的이나 이들 勞働者는 商工業發達이 如意롭지 못한 狀態에 있었으므로 非農業部門 즉 商工業部門에 吸收 收容될 만한 餘地가 稀薄한 社會經濟的 與件이었다. 따라서 農民離村은 都市에서의 健全한 就業機會獲得에 따라서 勞働者로서 生計維持를 講究하게 되지 못하고 火田民으로 轉落하는 가운데 生活維持를 期하게 되는 離農現象을 낳게 된 것이다. 이에 1933年의 統計에 의하여 火田民의 數와 地域的 分布狀況을 보면 다음 〈表 5〉 및 〈表 6〉과 같다.

또한 1930年代의 調査에 의하여 各道別로 整理된 支拂方式 즉 定租, 打租 및 執租別의 小作料에 관한 最高, 普通 및 最低率을 살펴보는 가운데 엄청난 小作料의 高率性에 驚愕을 禁

(3) 全羅北道 農會, 『全北의 農業』, 1930, p. 150.

(4) 久間健一, 『朝鮮農業의 近代的樣相』, 1935, p. 32.

〈表 5〉 朝鮮에 있어서 純火田民의 分布狀況(1933年)

道 名	戶 數	%	道 名	戶 數	%
京畿道	528	0.62	黃海道	4,315	5.22
忠清北道	1,565	1.89	平安南道	6,582	7.98
忠清南道	100	0.12	平安北道	17,266	20.92
全羅北道	1,153	1.39	江原道	22,022	26.68
全羅南道	97	0.11	咸鏡南道	23,782	28.81
慶尙北道	2,540	3.07	咸鏡北道	2,622	3.18
慶尙南道	—	—	全 鮮	82,572	100.0

資料：『朝鮮農會報』，第9卷 第1號，p.125.

〈表 6〉 純火田民의 漸增趨勢

年 度	總農家戶數	火田民戶數	比率(%)	年 度	總農家戶數	火田民戶數	比率(%)
1927	2,781,348	29,131	1.0	1932	2,931,088	60,497	2.1
1928	2,799,188	33,269	1.2	1933	3,009,855	82,572	2.8
1929	2,813,277	34,332	1.2	1934	3,013,104	81,287	2.7
1930	2,869,957	37,514	1.3	1935	3,006,489	76,472	2.5
1931	2,881,689	41,212	1.4	1936	3,059,503	74,727	2.4

資料：朝鮮總督府 農林局，『朝鮮の農業』，1938，pp.206~207.

〈表 7〉 日帝下の 畜小作料率(1930年頃)

道 別	定 租			打 租			執 租		
	最 高 (%)	普 通 (%)	最 低 (%)	最 高 (%)	普 通 (%)	最 低 (%)	最 高 (%)	普 通 (%)	最 低 (%)
京 畿 道	90.0	50.0	25.0	75.0	50.0	40.0	80.0	50.0	30.0
忠 清 北 道	73.0	50.0	20.0	50.0	50.0	30.0	75.0	50.0	5.0
忠 清 南 道	60.0	49.0	39.0	53.0	51.0	44.0	65.0	51.0	44.0
全 羅 北 道	80.0	45.0	30.0	70.0	50.0	30.0	80.0	50.0	30.9
全 羅 南 道	70.0	50.0	30.0	70.0	50.0	40.0	75.0	55.0	30.0
慶 尙 北 道	80.0	50.0	23.0	65.0	50.0	30.0	80.0	55.0	30.0
慶 尙 南 道	65.0	51.0	38.0	57.0	50.0	43.0	69.0	52.0	30.0
黃 海 道	60.0	40.0	—	70.0	60.0	40.0	70.0	55.0	43.0
平 安 南 道	75.0	45.0	30.0	—	50.0	—	68.0	50.0	45.0
平 安 北 道	70.0	45.0	26.0	50.0	50.0	50.0	70.0	55.0	30.0
江 原 道	—	—	—	—	40.0	—	—	—	—
咸 鏡 南 道	—	48.0	30.0	60.0	50.0	35.0	60.0	51.0	40.0
咸 鏡 北 道	58.0	47.0	36.0	59.0	50.0	43.0	50.0	50.0	50.0
	自 58.0	40.0	20.0	50.0	40.0	30.0	50.0	50.0	5.0
	至 90.0	51.0	39.0	70.0	60.0	44.0	80.0	55.0	50.0

資料：朝鮮總督府，『朝鮮の小作慣行』(上卷)，p.172에서 編製.

할 길이 없으며 이러한 高率의 小作料와 農民搾取 속에서 小作爭議의 社會經濟的인 提起는 하나의 必然的인 所産으로 나타나고 있었다(〈表 7〉 및 〈表 8〉 參照).

封建的 現物地代의 存續 強化와 打租法,<sup>(5)</sup> 執租法<sup>(6)</sup> 및 定租法<sup>(7)</sup>에 隨伴되는 小作料의 高率化는 封建的 生産樣式의 深化와 더불어 土地의 瘠薄化를 自招한 結果가 되었다.

〈表 8〉 日帝下의 田小作料率(1930年頃)

道 別	定 租			打 租			執 租		
	最 高 (%)	普 通 (%)	最 低 (%)	最 高 (%)	普 通 (%)	最 低 (%)	最 高 (%)	普 通 (%)	最 低 (%)
京 畿 道	80.0	50.0	15.0	60.0	50.0	34.0	75.0	50.0	10.0
忠 清 北 道	71.0	40.0	3.0	50.0	50.0	30.0	75.0	50.0	40.0
忠 清 南 道	55.0	44.0	35.0	52.0	49.0	43.0	59.0	51.0	44.0
全 羅 北 道	70.0	40.0	10.0	60.0	50.0	30.0	64.0	55.0	50.0
全 羅 南 道	60.0	40.0	20.0	60.0	50.0	30.0	75.0	55.0	30.0
慶 尙 北 道	80.0	45.0	20.0	65.0	50.0	30.0	75.0	50.0	20.0
慶 尙 南 道	61.0	45.0	35.0	54.0	49.0	42.0	67.0	48.0	39.0
黃 海 道	60.0	35.0	—	65.0	60.0	37.0	65.0	50.0	40.0
平 安 南 道	74.0	45.0	30.0	—	50.0	—	47.0	40.0	30.0
平 安 北 道	70.0	45.0	20.0	50.0	50.0	33.0	—	—	—
江 原 道	70.0	47.0	47.0	60.0	50.0	20.0	65.0	50.0	40.0
咸 鏡 南 道	43.0	43.0	20.0	60.0	50.0	35.0	57.0	50.0	40.0
咸 鏡 北 道	44.0	44.0	33.0	59.0	50.0	42.0	—	—	—
	自 43.0	35.0	3.0	50.0	49.0	20.0	47.0	40.0	10.0
	至 80.0	50.0	47.0	65.0	60.0	43.0	75.0	55.0	50.0

資料：朝鮮總督府, 『朝鮮의 小作價行』(上卷), pp. 238~239에서 編製.

- (5) 打租法은 農民들에 의하여 보통 打作, 並作, 半作 또는 半租 等の 通稱으로도 불리던 것으로서 地主 또는 그 代理人이 小作人과 함께 立會하여 收穫時에 實收穫物을 約定한 小作料率에 따라서 徵收하는 方法이다. 따라서 小作料額은 豊凶에 對應하여 變動하며 固定되지 않는다. 小作料는 普通 50%가 支配의이었으나 若干의 上昇傾向이 보이고 또한 地稅, 種子, 農具, 肥料의 負擔關係와 藁桿의 歸屬關係 등에 의하여 實際의 小作料收率에 多少의 相違가 있었다.
- (6) 執租法은 農民들에 의하여 普通 執穡, 看坪, 檢見 및 賭只 等の 通稱으로도 불리던 것으로서 收穫前 小作地의 作物이 立穡 그대로 있을 때 地主 또는 代理人이 小作人 立會下에 作況을 檢見 看坪 또는 坪刈하여 收穫豫想量을 推定해서 約定小作料率에 따라 小作料를 徵收하는 方法이다. 勿論 豊凶에 對應하여 小作料額은 變動하였다. 地主나 小作人은 土地의 所在와 面積에 對한 豫備知識을 갖고 있으면 足하지만 地味가 不良하고 災害가 甚하면 檢見이 어려우므로 比較的 地味가 良好하고 災害가 적은 地域에서 行하여지고 있었다. 小作料率은 打租法과 마찬가지로 50%를 標準으로 하는 것이 支配의이나 往往 地主側이 主로 檢見 評價하므로 實納小作料率은 實際 收穫高의 60% 以上에 達하는 경우도 있었다. 種子, 農機具, 肥料 등은 모두 小作人負擔이며 間或 地主가 負擔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大部分 小作人이 이를 負擔하는 경우가 支配的이었다.
- (7) 定租法은 農民들에 의하여 普通 賭只, 定賭, 支定 및 定賭只 等등의 通稱으로도 불리던 것으로서 小作契約 締結當時에 地主와 小作人이 一定의 小作料를 定하여 原則的으로 當年の 豊凶에 關係없이 年年 約定 小作料를 徵收하는 方法이다. 定租法에 있어서는 地主와 小作人은 小作契約에 앞서 小作地의 面積, 地味, 收穫量에 對한 豫備知識을 必要로 한다. 따라서 이 小作料徵收方法은 比較的 收穫量의 變化가 적은 無質肥沃地에서 行하여지는 것이며 主로 田에서 行하여지고

〈表 9〉 年度別 小作爭議發生件數

年 度	件 數	年 度	件 數
1929	423	1933	1,975
1930	726	1934	7,544
1931	676	1935	25,834
1932	300	1936	29,975

資料：朝點總督府 農林局, 『朝鮮農地年報』(第一輯), 1940, pp. 5~6.

이러는 가운데 1930年以後의 農村經濟의 窮乏化는 深化一路에 있었거니와 農村經濟窮乏의 深化過程에서 社會經濟的 徵表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 小作爭議이고 이것은 年次的으로 累增된 樣相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表 9〉 參照).

小作爭議의 累增樣相과 더불어 그의 發生範圍가 擴散되어 農村의 平和는 顯著히 阻害되어지고 있는 狀態에 있었기 때문에 即刻的으로 朝鮮總督府內에 臨時小作調查委員會를 設置하여 小作制度改善에 關한 必要事項을 調査하게 하여 그의 答申에 根據하여 小作慣行改善要綱을 決定하여 應急的 改善方策을 政務總監을 通해서 各道知事에게 通牒하여 小作慣行上의 弊害除去에 努力하도록 한 바 있었으며 그의 方策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sup>(8)</sup>

### 1. 小作契約의 要式

小作契約은 口頭에 依存하든 書面에 依據하든 當事者의 自由이기는 하지만 小作關係를 明確히하여 將來의 紛爭을 事前에 防止하기 위하여 書面으로 함이 適當하다고 思慮되므로 이 方法에 依存 努力하도록 할 것.

### 2. 小作地의 所有權移動에 隨伴하는 小作權移動 또는 小作料의 引上

小作地의 賣買에 當하여 새로운 所有者로 하여금 從前의 小作關係를 承繼하도록 하되 小作權의 移動 또는 小作料의 引上 등을 濫發하지 말 것.

### 3. 小作地의 轉貸

小作地의 轉貸(所謂 中間小作)은 實際에 있어서 耕作에 從事하는 小作人負擔을 重壓하고 더욱 小作關係를 複雜하게 하고 있는 結果 小作爭議發生의 原因으로 되어 있기도 하므로 兵役, 疾病, 其他 不得已한 事由에 依해서 耕作不能한 경우를 除外하고서는 이를 하지 않

畜의 경우에는 많이 行하여지지 않았다. 즉 畜에 있어서는 水利灌溉施設의 不充分으로 말미암아 旱水害의 影響을 크게 받아 豐凶의 差가 크므로 定租法에 依據하는 것은 地主나 小作人의 兩側에 모두 不便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畜의 경우에는 灌溉排水가 完備된 良畜이 아니면 이 方法을 採擇하지 않는 것이 普通이었다. 小作料率은 全般的으로 50~60%가 가장 支配的이었고 다른 小作料徵收方法에 比하여 더욱 高率化하는 傾向이 있었다. 種子, 肥料, 農機具 등은 小作人이 負擔하며 地稅는 地方에 따라서 小作人이 負擔하기도 하고 地主가 負擔하기도 하며 때로는 契約에 의하여 兩側이 折半씩 負擔하는 경우도 있었다.

(8) 朝鮮總督府 殖產局, 『朝鮮に於ける小作問題』, 1939, pp. 274-279.

도록 할 것.

4. 小作權의 存續期間

지금과 같이 小作期間의 設定없이 地主가 隨意로 小作人을 變更함에 있어서는 小作人의 生活安定 및 農事改良을 妨害하고 있으므로 普通 耕作目的의 경우는 3年, 桑園設定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0年을 下廻하지 않는 小作期間을 定하고 더우기 小作人에 있어서 小作關係의 繼續을 希望하며 아무런 背信行爲가 없는 경우에는 합부로 小作人을 變更하는 것과 같은 不當한 小作權의 移動을 하지 않도록 할 것.

5. 小作權의 相續

小作契約期間中에 小作人이 死亡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相續人으로 하여금 小作을 繼續할 意思가 없는 경우를 除外하고서는 小作權을 承繼하도록 할 것.

6. 小作契約 解除

小作料의 滯納을 理由로 하는 小作契約의 解除는 小作人이 1年分の 小作料全額을 滯納하는 경우 또는 繼續하여 2年에 걸쳐서 每年의 小作料의 一部分을 滯納하는 경우에 있어서 地主가 2月을 넘기지 않는 期間에 納入하여야 한다는 趣旨를 催告하였음에도 이를 納入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할 수 없도록 할 것.

7. 小作料形態

小作料는 定租로 하되 田 및 水利灌溉施設의 便利가 있는 畝의 小作料는 可及的 定租로 할 것

8. 小作料額의 公正

小作料額은 土地의 狀況, 其他 各種事情에 依하여 달라서 이를 一率적으로 決定함은 困難한 것이기는 하지만 往往 高率的이어서 妥當치 않는 것이므로 이들에 對하여서는 各地方의 事情에 依하여 漸次的으로 相當額을 引下하도록 할 것.

9. 小作料額의 量定

小作料의 量定은 恒常 度量衡에 關한 法規에 따라서 公平하게 이를 行하게 하여 不正의 量定이 없도록 할 것.

10. 小作料의 運搬費

小作料의 運搬費는 納入場所가 小作人의 住所로부터 2里 以內에 位置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小作人이 이를 負擔하며 2里를 超過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超過部分에 對한 運搬賃은 地主로 하여금 負擔하도록 할 것.

11. 小作料 以外の 小作人負擔

小作地의 公課는 地主가 이를 負擔하며 勞役의 提供은 小修繕의 것에 局限하고 그 以上



의 것은 強要하지 말 것.

### 12. 小作地返還의 경우 小作地에 存立하는 作物의 買收

桑園, 其他 特殊作物인 小作地를 返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可及의 地主로 하여금 作物을 買收하게 할 것.

### 13. 小作人에 對한 地主의 獎勵

地主로 하여금 小作地의 農事改良施設에 留意하게 하며 優良한 小作人에 對하여서는 金品の 贈與, 其他의 方法에 依하여 이를 表彰하는 등 恒常 小作人의 獎勵 勸誘에 努力하도록 할 것.

### 14. 舍音의 弊害矯正

舍音의 弊害는 主로 舍音이 事情에 精通하지 않은 地主와 弱少한 小作人間에 있음을 利用하여 絶對의 權限을 橫暴할 憂慮가 없지 않아 있으므로 大體로 다음과 같은 方法에 依해서 이를 矯正하도록 할 것.

① 地主는 可及의 小作地의 管理를 스스로 하도록 하고 다만 遠隔地에 居住하거나 또는 疾病老幼, 其他 理由에 依하여 自身이 管理不能인 경우를 除外하고서는 舍音을 設置하지 못하게 할 것.

② 舍音設置에 對하여서는 人選에 注意하도록 하며 契約은 이를 書面契約에 依據하도록 할 것.

③ 舍音을 設置할 때는 地主로 하여금 各小作人에 舍音의 姓名 및 權限을 通知하도록 할 것.

④ 舍音에 對하여서는 事務管理上 別差없는 한에 있어서 可及의 그의 委任面積을 크게 하고 그로써 舍音數를 많게 할 것.

⑤ 舍音에 委任되어야 할 事項은 大體로 土地의 管理, 小作料의 徵收, 檢見立會, 小作人의 指導 등에 局限하고 不得已한 경우를 除外하고서는 小作契約의 締結, 變更 그리고 解除 등에는 關與하지 않도록 할 것.

⑥ 舍音의 報酬는 契約書에 明示하고 一切 小作人으로부터 이를 徵收하지 말 것.

⑦ 舍音의 不正行爲에 對하여서 法에 依據하여 處分하여야 할 事件에 對하여서는 處分을 勵行하도록 할 것.

### 15. 小作爭議의 解決

小作爭議의 解決은 一般的으로 訴訟에 依存하여야 할 때 많은 時間과 經費를 要할 뿐만 아니라 解決後에 있어서 더욱 地主 對 小作人間의 좋지않는 感情을 남기는 事例가 많으므로 行政官廳의 中間介在없이 雙方間에 圓滑히 調整 解決되도록 할 것.

이와 같은 措置나 方法에 依하여 小作問題對策의 第一歩를 딘게 함과 同時에 小作爭議가

頻發한 道에 對하여서는 小作官을 設置하여 小作制度改善에 關한 指導 監督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나 累年の 惡慣習이 깊숙히 農村에 浸透되어 容易하게 改善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世界經濟恐慌의 襲來에 依한 農產物價格의 大暴落과 累年の 疲弊에 基礎한 負債의 累增的 增加는 農村의 窮乏을 더욱 深刻化시켜 小作問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小作農民의 窮乏化와 더불어 小作農民의 地主에 對한 鬭爭은 激增되었으니 이에 小作農民의 地主에 對한 鬭爭을 強壓 防止하고자 日帝는 日本의 小作爭議調停法을 模倣 改惡하여 小作調停令을 制定하고 官制 小作委員會를 各行政機關에 設置하여 小作爭議의 強制 勸解를 圖謀한 바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32년에 公布 施行된 이른바 朝鮮小作調停令<sup>(9)</sup>이란 것이 이 땅의 嚆矢의 小作法이 되었고 小作調停令은 文字 그대로 當事者에 對한 官의 調停에 依하여 小作紛糾의 解決을 企圖하는 措置가 되었다.

勿論 日帝는 1932년의 朝鮮小作調停令의 公布 施行에 併行하여 1932年 以來 朝鮮의 小作 農民에 對한 各樣色의 救濟計劃을 樹立한 바 있었다. 즉 1932년에는 5個年 豫定으로 細農 230萬戶의 經濟更生計劃<sup>(10)</sup>을 樹立한 바 있었고 同年에 10個年 計劃으로 2萬 4千戶 目標로 自作農創定計劃<sup>(11)</sup>을 樹立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小作調停令은 1933年 10月 下旬頃に 日帝 地主階級들이 朝鮮總督府의 小作立法에 對한 強硬한 反對意思를 表示하고 反旗를 들었다고 그것은 朝鮮農會主催下에 全國農業者大會를 媒介로 하여 露骨化시킨 바 있었다. 當時 農業者大會에서의 反對決議인즉 小作令의 制定은 朝鮮의 現狀에 비추어 볼 때 時期尙早의 것이기 때문에 反對한다 하고 그의 理由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主張한 바 있다.<sup>(12)</sup>

「朝鮮에 있어서 土地는 生産增加의 餘地가 極히 豊富함에도 不拘하고 一般農民은 知識의 程度가 낮고 經濟力 亦是 貧弱하기 때문에 이것을 開拓함에는 地主를 善導하여 이들이 指導 援助에 當하도록 하는 方法 以外는 別다른 妙案이 없다. 現實的으로 朝鮮農業의 發達에

(9) 朝鮮小作調停令은 日本의 同類法에 根據하되 大概 다음과 같은 要旨의 것이었다. ① 地主·小作人間에 小作料, 其他 小作에 關한 爭議를 보았을 때 當事者의 申告에 依하여 法院에서 調停하되 ② 調停事件이 府郡島의 小作委員會에 附議시켜 調停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러한 措置를 取하여 結果를 보되 ③ 調停成立은 裁判上의 和解와 같이 取扱되고 드디어 調停을 보지 못하면 물론 民事訴訟件이 될 수 있다. 司法機關이 民事의 調停에 나선 것은 韓國에 있어서 이 小作調停이 嚆矢라 할 수 있고 實地 相當한 件數의 處理를 본 바 있었다.

(10) 經濟更生計劃이란 5個年 計劃으로 細農 230萬戶를 對象으로 所謂 自力更生의 標榜下에 不足食糧의 充實과 負債整理 그리고 現金收支均衡을 圖謀한다는 目的下에 樹立된 計劃을 말한다.

(11) 自作農創定計劃이란 農村經濟更生의 實績을 擧揚함에 目的을 두고 樹立된 計劃을 말한다. 이는 自作農의 漸減을 防止하며 兼하여 農村思想의 善導를 期하고자 하는 意中에서 樹立된 計劃을 말한다.

(12) 久間健一, 『朝鮮農業の近代의 樣相』, 1935, p. 43.

關한 實相인즉 官府의 施設投資에 全적으로 依存된 바 큰 것이 事實이기는 하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地主의 많은 犧牲 속에 小作人을 指導 保護하고 그의 實質에 있어서는 共同經營 形態下에 있어서 農事의 改良 增殖을 圖謀함에 基礎되어 있는 것이 事實이다. 더우기 앞으로 이와 같은 地主의 活動에 期待되는 바 實로 크다. 그러므로 萬一 法令으로써 權利와 義務上에 地主와 小作農民을 對立시킬 때에는 農村의 平和를 破壞하며 朝鮮農業進步의 길을 阻止케 하는 憂慮가 적지 않다」라는 內容의 것이었다.

한편 地主階級の 反對運動에 對한 對抗阻止運動으로서 小作農民 中心의 反對運動이 展開된 바 있었다.<sup>(13)</sup> 小作農民階級 中心의 反對運動의 第一聲이 京城에서 터져 나왔고 京城에 있어서 小作農民階級에게 同情을 갖는 天道敎幹部, 朝鮮人辨護士團, 朝鮮農民團體 및 諺文 言論機關 그리고 其他 民間有力者 等等 各種團體·有志들이 蹶起하여 地主階級の 反對運動에 對抗함과 同時에 朝鮮總督府에게 法令의 制定을 強力히 促求한 바 있었다.

小作令制定에 對한 實踐的 促求手段으로서 團體代表 20餘名이 會合하여 實行委員을 選舉하고 朝鮮小作令制定促進會를 組織하기에 이르렀고 그에서

- ① 朝鮮小作令制定을 促求한다.
- ② 朝鮮小作令制定에 關한 一切의 反對運動을 排擊한다.

는 決議文을 作成하여 이를 朝鮮總督府에 提出함과 同時에 各省大臣, 政黨總裁, 日本政界의 有力者 등 中央要路에 打電하고 한편에 있어서는 代表委員들은 長文의 陳情促進書를 攜帶 上京하여 이에 對한 對抗運動을 奉行하고 또한 一行들은 總督府를 訪問하여 總督과 總監을 面接하여 決議文을 提出하고 小作令制定實施의 促進을 再闡명한 바 있었다.

이어서 2月 2日에 朝鮮小作令制定促進會는 特別委員會를 朝鮮호텔에서 開催하여 이를 促進對策에 附議하여 協議한 結果

- ① 小作期間은 長期가 當하여 10年을 主張한다. 設令 最短期間의 設定이라 하더라도 5年 以下는 絶對 反對한다.
- ② 小作令의 名稱變更에 對하여서는 絶對 反對한다.
- ③ 委員 가운데 2名으로 하여금 以上の 趣旨宣傳에 努力하도록 한다.
- ④ 地方有志들과 連絡을 取하여 妥當한 小作令制定의 促進運動을 強化한다.

는 等等을 決定<sup>(14)</sup>함과 同時에 劉文煥 등 3名의 代表는 總督府에 農林局長을 訪問하여 위와 같은 趣旨를 說明하고 아울러 京畿道廳에 知事를 訪問하여 이의 貫徹을 위하여 協助 努

(13)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1944, p. 659.

(14) 久間健一, 『朝鮮農家の近代的様相』, 1935, p. 46~47.

力하여 줄 것을 附託 依賴한 바 있다.

朝鮮小作令制定의 促進會運動이 中央에 있어서 開始되어짐을 導火線으로 하여 朝鮮內各地方에 있어서 漸次로 小作人階級運動이 發生하게 되었다 함은 여기에 說明할 나위도 없다.

以上은 主로 小作人側에서 본 促進運動의 概要인 것이나 더우기 促進運動의 一方法으로서 有力한 朝鮮人地主의 小作法에 對한 態度도 없지 않아 있었다. 즉 그들의 大部分은 小作令制定에 對하여 그것은 곧 緊要한 社會立法이고 이것 없이는 朝鮮農民의 眞正한 更生은 困難하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判斷下에 自進하여 要路에 陳情하거나 或은 다른 朝鮮人地主들을 勸誘하여 이의 促進運動에 關心을 갖게 되는 者가 많게 되는 現狀을 낳게 되었다.

이리하여 朝鮮小作令은 朝鮮人 가운데 一部 少數地主를 除外하고서는 大部分의 地主가 贊意를 表明하기에 이르렀고 機宜制壓에 立脚한 社會立法이라는 評 속에서 支持되어 진 것도 事實이다. 더우기 一部 人事間에서는 朝鮮小作令이야말로 朝鮮總督府治下에서 그 類例를 볼 수 없었던 唯一한 大衆的 立法이라는 點에서 制定을 促求하여야 한다는 主張이 盛行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農地令의 前哨契機인 朝鮮小作令의 制定過程에서 反對와 贊成의 兩極화된 側面에서 마침내 制定必要의 認識 속에서 農地令制定의 歷史的 產物을 보게 된 것이다.

### III. 農地令의 內容

農村經濟更生計劃과 自作農創定計劃의 樹立 施行에 이어서 朝鮮小作調停令의 公布 施行과 더불어 實體法으로서의 小作法制定을 期하여 小作弊害의 根源을 芟除하고 小作問題의 解決을 期한다는 目的下에 朝鮮農地令을 立案하여 1934年 4月 1日 制令 第5號로서 公布되고 同年 10月 20日부터 實施를 보게 된 것이 바로 農地令이거니와 그에 規定되어 있는 事項은 다음과 같이 大別되어 지고 있다.<sup>(15)</sup> 첫째는 農地令의 適用範圍를 規定한 것이며, 둘째는 舍音, 其他의 小作地管理者에 關한 것이고, 셋째는 直接의 小作條件의 重要事項을 規定하며, 넷째 小作委員會에 關한 規定, 다섯째 裁判 및 裁判費用에 關한 規定, 끝으로 制裁에 關한 規定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一般的으로 農地令에 規定하고 있는 事項은 이들 여섯 個의 事項으로 大別할 수 있다.

첫째는 農地令의 適用範圍를 規定하고 있다. 이는 第一條<sup>(16)</sup>와 第二條<sup>(17)</sup>에서 明示되어

(15) 吉田正廣『小作に關する基本法規の解説』, 朝鮮農政研究同志會, 1934, p. 5.

(16) 「本令은 耕作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賃貸借에 適用한다.」

(17) 「土地의 耕作을 目的으로 하는 請負, 其他의 契約은 이를 賃貸借로 看做한다.」

있다.

이렇게 볼 때 農地令의 第一條에서의 賃貸借의 適用範圍는 耕作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賃貸借에 局限 適用하고 있었기 때문에 假令 土地가 農業用土地로서 더우기 그 契約이 賃貸借契約에 의하여 또는 一般的으로 그 土地가 小作地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牧野地, 山林地 및 農業用建物敷地, 作業用地 등등의 경우에 이것들이 耕作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賃貸借이 아니기 때문에 農地令의 適用範圍에서 除外되어 있어서 小作制 芟除에 能動的으로 對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農地令은 所謂 永小作에 對하여서도 그 目的이 耕作을 目的으로 하진 牧畜을 目的으로 하진 그것은 適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永小作人은 그 權利의 存續期間內에 있어서 耕作者는 牧畜을 위해서 土地를 第三者에 賃貸借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農地令의 適用을 받는 耕作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賃貸借는 그 適用範圍가 所謂 小作契約中の 典型的이며 量에 있어서 大部分을 占有하는 一般田畝의 普通小作의 경우에만 局限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一般田畝 가운데에는 官有地의 貸付 또는 使用許可地, 國有未墾地의 貸付地 或은 國有山林의 貸付地 等等은 特殊法規에 依해서 支配되어지는 特殊의 賃借關係에 있었기 때문에 農地令의 適用을 받지 않는 것으로 解釋되어 있었고 또한 公有水面埋立令에 依하여 埋立權者가 埋立工事의 竣工認可 以前에 있어서 耕作을 위하여 이를 利用하는 경우라도 國有未墾地의 貸付地와 똑같은 趣旨에 依하여 農地令의 適用을 받지 않는 것으로 解釋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農地令의 適用範圍를 加一層 明白히 하기 위하여 더우기 이에 小作慣習上의 特殊小作, 舍音, 其他 小作管理者의 報酬田(舍音田), 墓位土의 賃借, 從屬小作과 開墾小作 等の 耕作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賃借關係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의 內容을 알 수 있게 된다. 慣習上의 特殊小作이란 賭地慣行(鴨綠江 및 大同江沿岸의 現行慣行), 禾利慣行(全羅北道 全州地方의 舊慣行), 永稅慣行(黃海道 信川地方의 舊慣行), 併耕慣行(慶尙南道 固城郡 晉州郡地方의 舊慣行)을 指稱하는 것이다. 이들의 慣行은 어느 것이나 永代小作으로 小作人 自身이 自由로이 그의 小作權을 第三者에게 讓渡 또는 轉貸할 수 있어 이른바 民法에서 말하는 永小作權의 範疇에 넣을 것인가 慣行에 基礎한 物權的 效力을 갖는 特殊小作으로 認定하여야 할 것인가에 對하여서는 議論의 餘地가 있다손 치더라도 特殊小作으로서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限 永小作으로 認定하여야 한다는 性質의 것이므로 所謂 耕作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賃貸借라고 認定하기에는 困難한 것이므로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農地令의 適用外에 있었다고 解釋되어 진다.

다음에 從屬小作이란 慣習上 所謂 地主에 있어 家屋, 宅地, 田畓 등등을 또는 田畓단의 使用收益을 約束하여 小作人에 있어 그 代價로 地主의 農作, 其他의 雜役을 하여 줌을 約束한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나 이들 亦是 耕作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賃貸借이고 或은 이를 雇傭으로 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田畓賃借에 關한 限에 있어서는 農地令의 適用을 받아야 한다고 解釋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開墾條件으로 或은 年限普通小作地와 같은 小作料로서 金錢 또는 穀物을 徵收하는 경우, 小作人의 勞資에 依하여 開墾을 하였을 경우 同時에 耕作을 위해 土地使用收益을 하고 있는 開墾小作의 경우, 從屬小作 등과 같이 直接的으로 地主에게 勞力을 提供하지는 않지만 地主를 위해 勞資를 提供하며 同時에 土地使用收益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하면 從屬小作과 그 理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農地令의 適用對象으로 보코 取扱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農地令 第一條에서의 耕作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賃貸借에 通用함과 第二條의 土地의 耕作을 目的으로 하는 請負, 其他의 契約은 이를 賃貸借로 看做함이라는 適用範圍에 있어서 慣習上의 特殊小作에 屬하는 賭地慣行, 禾利慣行, 永稅慣行 및 併耕慣行 그리고 從屬小作 등등이 모두 適用의 例外가 되므로 小作農保護의 基本趣旨와 相衝되는 結果를 낳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舍音, 其他 小作地의 管理者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으며 이는 第三條,<sup>(18)</sup> 第四條<sup>(19)</sup> 및 第五條<sup>(20)</sup>에 明示되어 있다.

農地令上에는 舍音, 其他 小作地의 管理者라고 하고 있으나 小作地管理者의 意義, 管理契約의 法律上의 性質, 管理事務의 範圍, 管理者의 資格, 其他에 對하여 規定하는 바 없다. 따라서 農地令에 있어서 舍音, 其他 小作地의 管理者란 名稱은 勿論 契約의 性質, 管理事務의 範圍 등등은 不問하고 實質上의 小作地管理者 全部를 包括적으로 指稱한 것으로 解釋되고 따라서 그 名稱을 農監, 農務員, 管理人, 總代, 首作人, 區長, 支配人, 農民駐在員 等이라고 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또한 管理關係의 基礎가 民法에 依據하여 所謂 委任, 雇傭 또는 請負, 其他 如何한 것이든지 間에 或은 管理者의 身分如何를 不問하고 其他 管理者의 管理事務가 小作地管理에 關한 事務의 一部이건 全部이건 그리고 管理事務가 小作人에 對하여 直接的이든 間接적이든 그밖에도 小作地管理者가 法人이든 團體이든 그 어느 것을 不

(18) 「賃貸借人은 舍音, 其他 小作地의 管理者를 둘 때에는 朝鮮總督이 定하는 바에 따라서 府尹, 郡守 또는 島司에 届出하여야 한다.」

(19) 「府尹, 郡守 또는 島司에 있어서 舍音, 其他 小作地의 管理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府郡島 小作委員의 意見을 聽取하여 賃貸人에 對하여 變更을 命하도록 한다.」

(20) 「前二條에 規定되어 있는 以外에 舍音, 其他 小作地의 管理者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朝鮮總督이 이를 定한다.」

問하고 總網羅된 것으로 解釋된다.

세제 直接의 小作條件의 重要事項을 規定하고 있으며 이는 第6條로부터 第23條<sup>(21)</sup>에서 明示되어 있다.

이리하여 農地令의 세제 目的에 該當되는 小作條件의 重要事項의 規定內容은 小作地賃貸

- (21) 第6條 「第15條, 第16條 第1項, 第18條, 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과 달리 特約으로 賃借人에 不利한 것은 이를 하지 않는 것으로 看做한다.」
- 第7條 「小作地의 賃貸借期間은 3年 以下로 한다. 但 永年作物栽培을 目的으로 하는 賃貸借에 있어서는 7年 以下로 한다.」
- 第8條 「小作地의 賃貸借에 對한 期間이 定하여 있는지의 경우가 不明할 때는 前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3年 或은 7年으로 定하여 진 것으로 看做한다.」
- 第9條 「前 2個條의 規定은 小作地의 賃貸借期間을 更新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但 7年으로 되어 있음은 새로이 永年作物을 栽培함을 目的으로 하여 更新하는 경우를 除外한 以外에는 3年으로 한다.」
- 第10條 「前 3條의 規定은 傷痍, 疾病, 其他 不得已한 事情에 依하여 賃貸人 또는 同居의 親族으로서 主로 耕作에 從事하는 者가 耕作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또는 土地利用目的의 變更, 其他 特別한 事由에 依하여 第7條 第1項 或은 前條 但書에 規定하는 期間 以上 賃貸不能하게 된 事情이 存立됨에 따라서 一時 土地를 賃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않는다.」
- 第11條 「賃貸借當事者의 相續人은 相續開始의 時點부터 被相續人의 小作地의 賃貸借에 基礎하여 一切의 權利義務를 承繼하도록 한다.」
- 第12條 「小作地賃貸借은 登記가 없어도 小作地의 引渡가 있을 때에는 其後 小作地에 對하여 物權을 取得한 者에 對하여 그 效力을 發生하게 한다.」
- 第13條 「賃借人은 賃貸人의 承諾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小作地를 轉貸할 수 없게 된다.」
- 第14條 「前條의 規定은 產業組合, 其他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法人 또는 團體가 賃貸한 小作地를 더욱 그 團體員에게 使用 또는 收益을 얻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않는다.」
- 第15條 「賃借人이 小作料의 一部를 支拂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賃貸人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그 受領을 拒否할 수 없다.」
- 第16條 「不可抗力에 依하여 收穫量에 뚜렷한 減少 있을 때에는 賃借人은 賃貸人에 對하여 小作料의 輕減 또는 免除를 屆出할 수 있도록 한다.」
- 第17條 「契約 또는 慣習에 依하여 檢見上 小作料額을 定하는 경우의 檢見 및 前條의 屆出에 依해서 하는 檢見에 關한 必要事項은 朝鮮總督이 이를 定한다.」
- 第18條 「第10條에 規定하는 賃貸借을 除外한 以外에 當事者가 小作地의 賃貸借期間滿了前 3月 乃至 1年內에 相對方에 對하여 更新拒絕의 通知 또는 條件을 變更하지 않는다 하면 賃貸借을 更新하지 않는 趣旨의 通知를 하지 않을 때에는 前賃貸借과 同一條件으로 賃貸借을 하고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 第19條 「賃貸人은 賃借人의 背信行爲가 없는 限에 있어서 賃貸借更新을 拒絕할 수 없다. 但 賃貸人에 正當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 第20條 「賃借人이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또는 同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하여 第三者로 하여금 小作地의 使用 또는 收益을 目的으로 할 때에는 賃貸人은 賃貸借의 解除를 할 수 있다.」
- 第21條 「第16條의 小作料의 輕減 또는 免除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當事者가 小作委員會의 判定을 求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判定이 있을 때까지 朝鮮小作調停會에 依한 調停申立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調停이 끝날 때까지 賃貸人은 當該 小作料의 履行遲滯를 理由로 하여 賃貸借의 解除를 할 수 없도록 한다.」
- 第22條 「小作地返還의 경우에 있어서 小作地에 契約에 따라서 作付한 作物이 植栽되어 있을 때에는 賃借人은 賃貸人에 對하여 相當 價格으로 이를 買取할 수 있는 請求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第23條 「第15條 乃至 第17條의 規定은 賃貸人和 轉借人의 關係에 準한다.」

借의 期間設定이 重要한 것이 되어 있고 그것은 小作賃貸借期間이 3年을 下廻할 수 없고 永年生作物은 7年을 下廻할 수 없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는 內容과 小作地賃貸借期間의 更新을 主된 規定內容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同時에 小作地賃貸借期間에 對한 例外設定도 規定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네째는 小作委員會에 關한 規定으로 第24條로부터 第27條<sup>(22)</sup>가 이에 該當된다.

이리하여 農地令의 네째 目的은 小作料 및 小作關係에 對한 異議申立을 小作委員會에 屆出하여 그의 公正하고 客觀的인 判定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內容規定과 더불어 裁判上에 繫留 및 未確定되고 있을 때의 小作에 關한 諸般事項을 決定 施行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을 規定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다섯째의 目的은 裁判 및 裁判費用에 關한 것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第28條<sup>(23)</sup>와 第29條<sup>(24)</sup>에서 明示되어 있다.

여섯째의 目的은 制裁規定으로 第30條<sup>(25)</sup> 및 第31條<sup>(26)</sup>에 明示되어 있다.

#### IV. 農地令의 性格

農地令의 內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農地令은 耕作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賃貸借에 適用하기로 하고 于先 畝音의 惡弊를 除去하기 위하여 地主와 畝音, 其他 小作地管理者를 設置한 경우에는 이를 屆出하게 하고 地方官署는 그 人物의 適否를 小作委員會의 意見에 따라 決定할 뿐만 아니라 小作權移動을 防止하기 위하여 普通作物의 耕作을 目的으로 하는 小

(22) 第24條 「當事者は 合意로써 關係地에 所在하는 小作委員會에 對해서 小作料, 其他 小作關係에 對하여 判定을 求할 수 있다.」

第25條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判定을 求한 事件에 對하여 訴訟이 繫留中에 있을 때에는 朝鮮 小作調停令에 依한 調停申立이 受理되어 있을 때에는 判定이 있을 때까지 當該 裁判所는 決定으로써 訴訟手續 또는 調停手續을 中止할 수 있도록 한다.」

第26條 「裁判所는 當事者 또는 小作官의 申立에 依하여 小作委員會의 判定이 不當할 可能性이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이를 取消할 수 있도록 한다. 이 申立은 小作委員會의 判定通知가 있는 날로부터 2週日 동안에 이를 施行하지 않는 경우에는 無效로 한다.」

第27條 「小作委員會의 判定은 取消에 對한 申立없이 前條 第1項의 期間을 經過하고 또한 申立 棄却의 裁判이 確定된 날로부터 當事者間의 契約으로 그 效力을 갖도록 한다.」

(23) 「第2條 第2項 또는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裁判은 小作地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또는 地方法院 支院의 合議部에서 朝鮮民事令에 依存 決定되어진 非訟事件手續法에 依해서 이를 行한다.」

(24) 「第2條 또는 第26條의 規定에 依한 裁判費用에 對해서는 朝鮮民事令에 依存되어야 한다는 民事訴訟費用法 第16條 및 民事訴訟用印紙法 第16條의 規定에 依據한다.」

(25) 「小作委員會 會議의 顛末, 小作委員의 意見 或은 小作官의 意見을 漏池할 때에는 千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26) 「賃貸人이 第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屆出을 하지 않고 或은 虛偽屆出을 敢行하였을 때에 또는 第4條의 規定에 依한 命令을 違反하였을 때에는 300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작의 경우는 最低 3年の 時限을 그리고 桑樹, 果樹 等 永年作物의 耕作을 目的으로 하는 小作은 7年을 下廻할 수 없도록 規定함으로써 小作權의 安定을 主眼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惡質舍音의 경우 이를 履行하는 者 적었으며 또한 小作權移動防止를 위한 3年 및 7年の 小作期間의 設定도 地主側에 正當한 理由가 있다는 口實下에 그리고 小作人側에 背信行爲가 있다는 理由下에 언제든지 解除되고 말았다는 事實, 그밖에 農地令 自體가 가장 重要한 小作料額에 있어서는 何等의 制限規定도 設定하지 않고 小作料額에 對한 紛爭이 있을 경우에라도 府郡島 小作委員會의 判決에 依存한다는 地主本位의 政策을 堅持하고 있었다는 事實, 또 不可抗力의 災害에 依하여 收穫量에 顯著한 減少가 있었을 때에만 小作人은 小作料減免의 申請을 할 수 있게 한 農地令 法規上의 規定內容과 더불어 小作料減免의 申請마저도 法規上으로는 小作人 立會下에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事實上으로는 執租와 마찬가지로 地主單獨決定의 慣習이 거의 그대로 踏襲되고 있었다는 事實 등등 云云」<sup>(27)</sup>을 指摘할 수 있다.

위에서 農地令의 性格인즉 그의 客觀性面과 實質的인 實踐性面에서 많은 問題點을 內在하고 있었다는 點에서 評價面에서 歷史的 意義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이는 農地令 施行 以後의 小作爭議의 解決內容에서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즉 「1927~1932年間の 爭議에 있어서는 小作權 또는 小作地關係가 51.8%이었음에 反하여 1933~1939年間の 爭議에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80.9%로 增加되었다는 事實과 耕作權確保를 目的으로 한 1933~1939年間の 激增된 爭議件數에 있어서 要求貫徹이 60%水準 밖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事實 云云」<sup>(28)</sup>에서 農地令實施下에서도 온갖 口實下에 小作權의 移動이 依然히 恣行되고 있었다는 內容을 指目할 수 있게 된다.

農地令에 對한 評價는 小作人의 地位安定과 小作料, 其他 分配關係에 미치는 影響側面에서 解明되고 있는 것도 있다.<sup>(29)</sup>

즉 農地令은 무엇보다도 小作人의 地位安定에 있어서, 小作期間에 있어서 過去의 不定期的인 小作期間設定에 反하여 原則적으로 全部 定期小作化하고 普通作物의 耕作目的으로 하는 小作에 있어서는 3年以上, 桑樹 및 果樹 등에 있어서는 7年으로 하여 小作安定을 期하였고 小作契約의 繼續을 履行하게 하는 措置를 講究하게 함으로써 小作關係의 安定을 圖謀하였다. 그리고 小作契約의 解除制限에 있어서도 小作料의 履行遲滯를 理由로 하여 契約을 解除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였으며 小作契約形式의 變更에 對하여서도 書面契約에 準하도록

(27) 全錫淡·李基洙·金漢周, 『日帝下의 朝鮮社會經濟史』, 朝鮮金融組合聯合會, 1947, p. 166.

(28) 前掲書, p. 168.

(29) 朝鮮總督府 殖產局, 『朝鮮に於ける小作問題』 1939, pp. 378-386.

하고 그의 變更을 一方的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 小作人의 地位安定에 寄與한 것이라는 評價도 있다.

또한 農地令은 不可抗力에 依해서 收穫量에 顯著한 減少가 있을 때에는 賃借人은 賃貸人에 對하여 小作料의 輕減 또는 免除를 届出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우기 減免의 要求는 特約 또는 慣習의 有無에 不拘한 形成權의 賦與 속에서 不作에 依한 小作料의 減免과 檢見의 合理化를 圖謀함으로써 小作料算定에 客觀化를 期하였으며 畝音, 其他 管理인의 取締와 小作人의 轉貸借의 禁止를 嚴格히 規制함으로써 小作制度改善에 적지 않게 寄與하였다는 評價가 있다.

위와 같은 評價에 따라서 農地令의 小作關係의 安定과 小作料策定關係의 客觀化 등등을 肯定的으로 보게 되는 것이나 그러나 農地令 自體의 法的 效力이나 實踐力의 次元과 地主 優位의 社會經濟의 狀況 속에서의 農地令의 規定을 살펴볼 때 農地令이 本來의 目的이나 趣旨에 아무런 蹉跌없이 그의 徹底한 施行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많은 疑問을 낳게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事實이라 하겠다.

한편 農地令에 對한 評價는 「1934年の 朝鮮農地令은 日帝下 小作人의 耕作權을 擁護함에 相當한 進歩性을 보이었다. 그의 動機는 如何든 그가 地主의 恣意的 行弊에 對하여 效果的 制約의 措置이었음은 그의 制定當時 地主側의 猛烈한 反對運動이 立證한 事實이다. 즉 그에 依하던 小作人에 特別한 過誤가 없는 限 普通小作에 있어서는 3年, 永年作物의 栽培에 있어서는 7年の 小作期間을 保障하였고 그 以上 延長할 수 있는 小作人保護規定을 添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小作料의 策定에 關한 限 同法令은 있을 수 있는 紛爭을 小作調停法에 移讓함으로써 要點을 回避하고 있는 體裁이다. 그러므로 本法令의 公布 以後 如前히 小作爭議는 續出하였으나 그것은 모름지기 本小作法의 缺陷만에 基因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當時 官憲에 對等할 만큼 一部 日本人 大地主의 勢力은 컸던 것이며 한편 群小地主라 할지라도 一片의 小作法이 즉시 그들을 壓服시키기에 그들 勢力은 小農에 比하여 너무나 優勢하였기 때문에 그의 實效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云云」<sup>(30)</sup>에서도 찾을 수 있다.

農地令에 對한 評價는 高橋龜吉의 見解에서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즉 「農地令은 그의 拙速的 側面도 勿論 重要하지만 農場을 經營하는 地主와 農場을 全然 經營하지 않는 地主間의 何等 區別도 없이 그를 劃一的인 取扱對象으로 하였다는 點에 問題가 있으며 同時에 農地令의 目的이 地主의 權力을 縮少하는 것보다도 農地開發과 農法改善에 必要한 義務를 賦課하여 그의 側面에서 小作人의 所得을 增大하게 하는 主眼點에서 講究되어진 것이었다

(30) 金俊輔, 『農業經濟學序說』, 高麗大學校 出版部, 1967, p. 241.

면 더욱 좋지 않았겠으나 하는 默示的 評價의 內容」<sup>(31)</sup> 등등에서 農地令이 當初 意圖한 目的과 趣旨面에서 그의 役割을 다하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는 것도 事實이라 하겠다.

## V. 綜 合

첫째, 1934년에 公布 施行을 본 農地令은 日帝下 小作制度改善에 關한 重要한 施策의 一環이었던 것이나 그것은 1932년에 公布 施行된 朝鮮小作調停令에 根據되고 後續된 法制的인 裝置였다.

둘째, 農地令은 日帝下 小作爭議의 累增樣相과 더불어 그의 發生範圍가 擴散되어 深刻化된 農村不況 속에서 農村의 平和가 極度로 阻害되고 있었던 狀況에 對處하기 위한 處方으로서의 小作法을 制定하는 過程 속에서 所産된 結果物인 것이었으나 그것은 地主의 封建的 搾取를 그대로 認定하고 畝音의 橫暴과 地主의 頻繁한 小作權의 移動을 若干 制限함에 不遇한 것으로 되어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세째 農地令은 日帝下 半封建的 土地所有者 및 金融機關의 朝鮮農民에 對한 苛酷한 搾取와 그에 對한 非常한 關心과 執着의 背景 속에서 公布 施行이었기 때문에 그의 本來的인 使命이나 役割을 다할 수 없었던 性格이 되고 말았다고 볼 수 있게 된다.

## 參 考 文 獻

- [1] 金俊輔, 『農業經濟學序說』, 高麗大學校 出版部, 1967.
  - [2] 全錫淡·李基洙·金漢周, 『日帝下の 朝鮮社會經濟史』, 1947.
  - [3] 朱奉圭, 『韓國農業經濟史研究』, 先進文化社, 1980.
  - [4] 朱奉圭, 「日帝下 農村振興運動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經濟論集』, 第XVIII卷 第4號 (1979.12).
  - [5] 津曲藏之丞, 「朝鮮に於ける小作問題の發展過程」, 京城帝大 法文學會, 『朝鮮經濟の研究』, 1929.
  - [6] 全羅北道 農會, 『全北の農業』, 1930.
  - [7] 久間健一, 『朝鮮農業の近代的樣相』, 1935.
  - [8] 朝鮮農會, 『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 1930.
- (31)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1944, p. 661.

- [9] 朝鮮總督府 殖産局, 『朝鮮に於はる小作問題』, 1939.
- [10]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1944.
- [11] 吉田正廣, 『小作に關する基本法規の解説』, 朝鮮農政研究同志會, 1934.
- [12] 朝鮮農政研究同志會, 『朝鮮に於はる小作に關する諸法令及府郡島小作委員會關係法規』  
1937.